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전문가 자격요건 확대
(안 별표 1의2, 별표 2)

- 1) 환경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2)

- 1) 입지나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주민대표 자격요건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자에서 입지 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자 또는 입지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

다. 택지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 명확화(안 제4조제6항)

- 1)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 변경으로 인한 설치납부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 라. 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 1)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
- 마. 타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등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33조, 제34조, 별표 1의2,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재입법예고(2026. 2. 23. ~ 4. 6.)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발사업의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제7호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으로, “일간신문”을 “일반일간신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을 “구로 하여 등록한”으로, “일간신문”을 “일반일간신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로 하여 등록한”으로, “일간신문”을 “일반일간

신문”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제33조제4항제3호 중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로 하여 등록한”으로, “일간신문”을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제34조제6호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 전단 중 “위원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호가목)”을 “제2호가목”으로,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을 “입지 후보지 주변(입지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박사학위를”을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로 한다.

별표 2 제2호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의회,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

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전단 중 “특별자치도인”을 “특별자치시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의회, 특별자치도지사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이 완료된 입지선정위원회는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
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 시설이 설치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② ~ ⑥ (생략)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생략)

<신설>

구로 하여 등록한 -----

----- 일반일간신문---

--

3.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

급지역을 수도권매립지를 관

할하는 시·구로 하여 등록한

--- 일반일간신문-----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어서는 아니한다.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 ~ ③ (생략)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제34조(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5. (생략)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3.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로 하여 등록한 -- 일반일간신문-----
--

제34조(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

-----.

1. ~ 5. (현행과 같음)

6. -----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u>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u>	----- ----- <u>한국환경 연구원</u>
--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1. 입지선정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가. **입지 후보지 주변(입지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명 이상 7명 이내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2)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 3)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내
3.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부지에 둘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의회,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의회,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의 정원과 위원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기준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연 락 처	(044) 201 - 7413